

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27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7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09.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면허시 운영사를 별도선정(위탁)토록 면허조건 제시 *국토부-1076호(2009. 9. 3)
- 나. 기존 운영관리자(서울교통공사) 민간위탁 기간만료("24.9월)에 따른 민간 재위탁 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
- 다.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차기 운영관리자를 적기에 선정하여 김포도시철도 관리·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위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제3항 : 사무의 위임등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~ 중략 ~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「도시철도법」 제4조 : 사업면허조건(국토부 → 김포시장)
 -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-1076(2009. 9. 3) :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 운영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~
- 「도시철도법」 제42조 : 도시철도 운송사업의 위탁
 -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) 제3항
 -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

3. 위탁시설 현황

- 시설명 : 김포도시철도 시설
- 시설위치 : 양촌읍(차량기지)~김포한강신도시~사우동~김포공항
- 시설현황
 - 차량기지 : 1개소
 - 정거장(역사) : 10개소
 - 영업거리 : 23.67km
 - 열차운행 : 23편성(1편성-2량)

4. 위탁사무 내용

- 김포도시철도 관리운영
- 김포도시철도 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
-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

5. 재위탁(공모)

- 선정방법 :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준용
- 선정절차 : 사전공고('23.9) → 본공고('23.9~10) → 우선협상대상자선정('23.11)
→ 협약체결('24.1) → 인수인계및인허가승인신청('24.1~) → 운영개시('24.9)
- 위탁기간 : 5년 (2024. 9 ~ 2029. 9)
- 운영비(추정) : 합계 1,379억원 / 연평균 276억원
 - 산출근거
 - 추정 운영비 = '16.2월 상정시 운영비 × '23.5월 기준 물가상승 배수 × 부가세
 - = 1,079억원 × 1.162배 × 1.1 ≒ 1,379억원

※ 물가상승 배수 :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화폐가치 계산결과

6. 추진일정

- 2023. 7월 :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동의
- 2023. 9월 : 국내 입찰공고
- 2023. 11월 :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
- 2024. 1월 : 협상완료 및 계약 체결
- 2024. 4월 : 차기운영자 법적 인허가사항 승인 신청
- 2024. 8월 : 시설물 인수인계 최종점검
- 2024. 9월 : 차기운영사 운영 개시

7. 기대효과

-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차기 철도전문 운영기관을 적기에 선정하여 김포도시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

8. 예산수반사항(추정)

- 2024년 9월부터 5년간 운영비 1,379억원(추정)

소관 실·과·소		철도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철도과장 서 승 수
	팀장 직위·성명	철도운영팀장 최 영 문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공업주사보 이 승 학(☎5537)